

● 구 고 시

제 1995-13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송파)..... 11

제 1995- 4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11

제 1995- 2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종로)..... 12

제 1995- 2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종로)..... 12

제 1995- 41 호 도시계획사업(대법원청사신축)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 12

제 1995- 41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강남)..... 13

제 1995- 3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영등포)..... 14

제 1995- 40 호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강남)..... 15

제 1995- 42 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 15

제 1995- 2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마포)..... 16

제 1995- 67 호 도시계획사업(성북동길)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16

제 1995- 41 호 도시계획사업(영천동66-17~177-1간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서대문)..... 18

● 구 공 고

제 1995-100 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공람공고(양천)..... 23

제 1995-255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서초)..... 23

제 1995-118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동작)..... 23

제 1995-257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공고(서초)..... 24

제 1995-128 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공고(마포)..... 25

제 1995-135 호 도시계획사업(개봉3동312-14,16호양축가각)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공고(구로)..... 28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5-81 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29

● 동부건설사업소공고

제 1995-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29

●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1995-4 호 재산등록사항변동공개..... 32

● 인 사 발 령

..... 32

● 기 타

출석통지서..... 36

규 칙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5. 8. 5

서울특별시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2707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등기수속 등"을 "취득보고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여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국·과 및 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의하여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총괄관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

류

6. 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36조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2조제2항제7호"로 한다.

별지제18호서식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제18호서식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제18호서식 하단에 다음과 같이 "주"를 신설한다.

"주" 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위임취득하게 하는 시유재산의 취득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취득보고 누락으로 인한 재산 방치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치구청장에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취득보고는 시청의 예산배정 주관부서가 하도록 함.

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과 같이 이미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 서식에 있는 조항 외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한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5. 8. 5

서울특별시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708호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자도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과 동법시행령 제2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3. "복합민원"이라 함은 법 제18조의5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이하 "공장설립관련민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수 관계기관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해제, 신고, 추천, 협의 등(이하 "협의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③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 2.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 3.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
- 5.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

제4조(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①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서울특별시 상공과장, 국제교류과장, 도시계획과장
- 2. 자치구 시민국장 및 서울상공회의소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 3. 복합민원 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경제협력이나 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제1호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원은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된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원의 지정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즉시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명단을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시켜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 투자유치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외자도입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 및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두어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지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산업경제국장을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함(제3조).

나.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장설립 민원사무 관련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경제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책과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게 함(제4조).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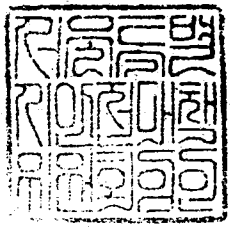
소방시설의설계업및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5. 8. 5

서울특별시장

상호(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등급 및 분야)
(주)영화종합건축사무소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사학연금회관 1705호)	이경남	제95-189호	95. 7. 18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주식회사 삼양종합설비	종로구 송인동 204-11(송인상가 ㉔ 208호)	정원준	제95-190호	95. 7. 18	○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분야)
벽산엔지니어링(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정우빌딩 708호)	김희근	제95-191호	95. 7. 18	○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기분야)
한진건설주식회사	광진구 구의동 546-1	안 용	제95-192호	95. 7. 18	○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기술사사무소 성일엔지니어링	성동구 도선동 22 (다남매빌딩 310호)	류태영	제95-193호	95. 7. 18	○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분야)
일진전기기술사사무소	강남구 대치동 896-6	나경남	제95-194호	95. 7. 25	○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분야)
삼성건설엔지니어링	관악구 봉천4동 866-11	안승혁	제95-195호	95. 7. 25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주)신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주)신한빌딩 7층	김성수 외 1	제95-196호	95. 7. 25	○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분야)
(주)그룹원	서초구 서초동 1702-7	유익현 외 2	제95-197호	95. 7. 25	○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기술사사무소 설화엔지니어링	서초구 서초동 1606-5(송남빌딩 201호)	이원구	제95-198호	95. 7. 25	○소방시설설계업 (3급기계분야)
(주)맥엔드엔지니어링	서초구 방배4동 882-30	박종인 외 1	제95-199호	95. 7. 25	○소방시설설계업 (2급전기분야)

<p>●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09호 공인교부공고 재난관리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관서에서 사용할 공인울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기 같은 조례 제11조의</p>	<p>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8. 5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부사유 : 관서신설(재난관리법 제9조 제1항) 2. 사용개시일 : 1995년 7월 27일 3. 공인명 및 인영
--	---

공 인 명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의 인
인 영	

<p>●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10호 교부청산금공시송달공고 우리 시가 사업시행하여 1990. 6. 30 한 지확정처분한 김포(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교부청산금 청구통보 후 반송된 통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p> <p>1995. 8. 5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지구명 : 김포(추가)지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시효소멸기간 : 1995. 8. 31 4.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또는 거소불명 5.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명세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공함 	<p>(등촌동 6필지, 가양동 10필지).</p> <p>6. 기타사항 : 공시송달 대상토지 소유자께서는 시효소멸기간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전화 : 731-6353, 6753)에 오셔서 교부청구하시기 바라며 기간경과 시에는 시효소멸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13호 소방설비공사면허행정처분공고 소방법 제58조제1호·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면허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1995. 8. 5 서울특별시장</p>
---	--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처분면허 (번 호)	행정처분 종류, 일시	행정처분 사 유	적용법규
(주)대흥종합 기술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7-4)	박화웅	공사업 제1종 (기계분야) (제94-110호) (94. 7. 8)	• 행정처분종류 : 영업정지 • 행정처분기간 : 95. 8. 1~95. 10. 31(3월)	면허의 기준미달(시 설 및 장비)	소방법 제58조제 1호·제6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 2호마목(1)]
(주)동진기전 (영등포구 대림동 709-7)	이희승	공사업 제1종 (기계분야) (제94-40호) (94. 7. 8)	• 행정처분종류 : 영업정지 • 행정처분기간 : 95. 8. 1~95. 10. 31(3월)	면허의 기준미달(시 설 및 장비)	소방법 제58조제 1호·제6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 2호마목(1)]
기림종합건설 (주) (강남구 논현동 142)	박찬현	공사업 제1·2종 (기계·전기분야) (제89-4호) (94. 8. 24)	• 행정처분종류 : 영업정지 • 행정처분기간 : 95. 8. 1~95. 10. 31(3월)	면허의 기준미달(사 무실미확보)	소방법 제58조제 1호·제6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 2호마목(1)]
백제전기 (관악구 봉천동 931- 21)	손홍도	공사업 제2종 (전기분야) (제86-81-85) (92. 7. 27)	• 행정처분종류 : 영업정지 • 행정처분기간 : 95. 8. 1~95. 10. 31(3월)	면허의 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소방설 비기사 미선 임)	소방법 제58조제 1호·제6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 2호마목(1)]
동양방송써스 템(주) (관악구 봉천동 873- 28)	임희석	공사업 제2종 (전기분야) (제90-1) (90. 11. 16)	• 행정처분종류 : 영업정지 • 행정처분기간 : 95. 8. 1~95. 10. 31(3월)	면허의 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소방설 비기사 미선 임)	소방법 제58조제 1호·제6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7조[별표16제 2호마목(1)]
<p>●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2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 공람공고</p> <p>1. 서울시고시 제1995-31호(95. 2. 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노원구고시 제1995-31호(95. 5. 18)로 지적승인된 다 음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p>			<p>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p> <p>2.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3.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과 상세한 사항은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 및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5. 7. ~1995. 8.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지개발공사

토목부(460-233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정비과(950-3385~6)

1995. 8. 5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지 및 명칭	사업 개요	결정고시일	지적 고시 일자
도시계획사업 (도로)	노원구 하계동 336-1~ 노원구 하계동 272 유원 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	B=9m L=400m (B=20m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호 (95. 2. 11)	노원구고시 제1995-31호 (95. 5. 18)

2.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3.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반, 지목과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 내용과 같음.
5.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공람장소에 비치된 내용과 같음.
6.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 생략

문서번호 건지 13330-966

시행일자 95. 8. 5

수 신 전기관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건축지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15조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1995. 8. 25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관리전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희망부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공 문 시 행

1995. 8. 5
 서울특별시장

일련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장부가액 (천원)	취득연월일	물품상태
1	7440-300	컴퓨터	큐닉스 옵니88	조	1	641	91. 9. 29	노후
2	7440-300	"	옵니6600	"	1	1,301	88. 2. 11	노후

<p>문서번호 수처 67712-417 시행일자 1995. 8. 5 수 신 전기관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여부를</p>	<p>조치하오니 희망 부서에서는 재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수처리사업장</p>
--	---

관리전환 소요물품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작업체	확보연도	물품상태	비고
디젤엔진	형식: D379 (V형 4기통) 용량: 500HP	대	1	CATERPILLAR	1976	수리요	

<p>문서번호 총부 12461-2117 시행일자 1995. 8. 5 수 신 전기관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p>	<p>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부서는 95. 8. 10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위 기일내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강동구청장</p>
--	---

관리전환 대상물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차량번호	연식	단위	수량	취득연월일	취득금액	물품의상태	물품소재지
2310-003	베스타 소형승합	서울 5로 1440	'88	대	1	88. 12. 24	7,199천원	중고품	강동구청
2320-009	봉고더블 소형화물	서울 8가 6249	'87	"	1	87. 11. 19	5,624천원	"	"
2320-009	포니픽업 소형화물	서울 8다 8742	'88	"	1	88. 12. 24	3,290천원	"	"

구 고 시

● 송파구고시제 1995-13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
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5

송 파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문정동 연합주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가. 위치 : 송파구 문정동 15 외 1필지
 - 나. 대지면적 : 2,414.70㎡
 - 다. 건축면적 : 9,209.57㎡
 - 라. 규모 : 아파트 9층 1동 78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94. 11~1995. 12

2) 변경내용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시행 면적	5,473.00	5,405.00	감 68.00	
건축 면적	727.60	942.92	증 215.32	
건축면적	2,751.70	3,612.98	증 861.28	

라.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구 오류동 199-1 학교법인 정문학원
이사장 윤순성

마.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 연월일

- 1) 착공일 :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준공예정일 : 1996. 8.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 구로구고시제 1995-49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73호(78. 7. 27)로
시설결정 및 서고 제665호(86. 9. 11)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허가된
구로구 오류동 199-1 외 4필지상 도시계
획사업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동법시행령 제6조 권한위임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1995. 8. 5

구 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
구 오류동 199-1 외 4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교사 증축
- 다. 면적 또는 규모
 - 1) 시설결정면적 : 5,473㎡

명세 : 해당사항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종로구고시제 1995-2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5

종로구청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갑을엔지니어링 대표 김창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 가. 사업위치: 종로구 평창동 290-5
 - 나. 대지면적: 2,721.13㎡
 - 다. 연면적: 8,906.06㎡
 - 라. 규모: 아파트, 지하1층, 지상13층, 1개동 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95. 7~97. 8

5. 고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인

●종로구고시제 1995-25호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아래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5

종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학교	배화여자중·고등학교, 전문학교	종로구 누상동 산 1-33 일대	43,440.5	감) 721.8㎡ * 면적정정 726.2㎡ 43,440.5→42,714.3
변경	"	"	"	42,718.7	* 추가결정 4.4㎡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도로	소로	3류	5	6m	590m	육인동 41	필운동 104-2	누상동 27-14 4.4㎡ 일부폐지
변경	"	"	"	"	"	"	"	"	

다. 지적승인도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서초구고시제 1995-41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86호(90. 8. 27)로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313호(91. 10. 25)로 동사업 시행(변경) 허가되어 사업시행 중인 서초구 서초동 967 일대 대법원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초구 서초동 967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 2) 명칭 : 대법원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1) 대지면적 { 당초 : 56,275.1㎡
 변경 : 57,793.3㎡
- 2) 건축면적 { 당초 : 9,743.17㎡
 변경 : 9,765.71㎡
- 3) 건축연면적 { 당초 : 66,075.43㎡
 (지하2층, 지상16층)
 변경 : 66,610.03㎡
 (지하2층, 지상16층)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없음)

- 1)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 2) 성명 : 법원행정처장

○ 소유자(변동없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김영준	강남구 삼성동 124-15	김정의	강남구 대치동 900-45
윤순녀	강남구 대치동 973-27	김정애	영등포구 신길동 9-2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1990. 8. 27~1995.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생략)

사.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서 : 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강남구고시제 1995-41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실시계획 변경인가

강남구고시 제1994-48호(94. 8. 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5. 8. 5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지 : 강남구 대치동 994-17(변동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인가(변동없음).

3.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변동없음)

4. 면적 및 규모 :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내역과 같음(변동없음)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95. 12. 31(변동없음)

6.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이해관계인 표시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김영태	강남구 대치동 901-16	김정문	송파구 방이동 166-1 현대파크빌라 202호
김정인	강남구 삼성동 73		

○ 관계인 주소, 성명(추가등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악구 봉천동 1528-14	강평관	관악구 봉천동 1557-24	허영만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 16-502	차옥자	관악구 봉천동 1547-19	장재현
관악구 봉천동 1539-16	김용철	송파구 방이동 166-1 현대파크빌라 202	박명규
송파구 가락동 199 가락프라자 8-403	남삼국	동대문구 전농동 98-19	장명옥
강남구 대치동 901-16	김영태	관악구 봉천동 945-20	심시택
마포구 현석동 175-2	백형모	관악구 봉천동 945-20	윤중섭
마포구 용강동 280-1	고재동	마포구 용강동 459-8 삼보주택 202	박순희
마포구 용강동 121-2 대교㉠ 다-405	전정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 10-803	한태생
마포구 청전동 148-3 문화㉠ 106	조은원	마포구 성산동 81-73	심기순
마포구 현석동 110-1	윤운순	강남구 논현동 39-15	김복현
마포구 신정동 52	김기섭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총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등포구고시제 1995-3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5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주)미주실업 대표이사 박상희 외 2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3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건립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3호
나. 대지면적: 1,651.30㎡
다. 건축 연면적: 11,726.59㎡

라. 규모 : 지하4층 지상15층 아파트(48세대), 업무 및 운동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 95. 7~97. 4

●강남구고시제 1995-40호

민영아파트사업계획승인

강남구 삼성동 2 의 5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5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명 : 민영아파트사업승인
 나. 사업주체 : 삼성1지역주택조합 외 5개 조합, (주)서광건설

다. 사업시행위치 : 강남구 삼성동 2 의 5 필지

라. 대지면적 : 7,262.65㎡

마. 사업규모 : 아파트-지하4층 지상20층 2동 303세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입주자회의실, 경비실

바. 건축연면적 : 36,785.47㎡

사. 사업기간 : 95. 7~97. 6

아. 도시계획결정 : 사업부지내 폭 4m도로(226.3㎡)는 용도폐지하고 서측 폭 6m도로를 폭 10m로 확장대체함.

1. 사업승인내역

구분	지목	위	치	면적(㎡)	구분	지목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도로	삼성동 2-4, 2-13		226.3	변경	대지	좌동	좌동	
기정	대지	삼성동 2 대지서측부분 (삼성동 111-103~111-104)		226.3	변경	도로	좌동	좌동	

2. 도면 : 별첨과 같음(생략).
 3. 기타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 비치 보관

●서초구고시제 1995-42호

민영(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조합)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5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자 : 반포지역 주택조합 외 3개조합

대표 조합장 이정구 외 306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 서초구 잠원동 63-2 의 27필지

나. 대지면적 : 9,154.8㎡

다. 건축면적 : 2,229.59㎡

라. 건축연면적 : 39,216.92㎡

마. 건설규모 : 아파트 2동 316세대

4. 다른 법률 의거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

- 도로법 제34조, 제40조

- 건축법 제8조, 제15조

- 하수법 제14조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고시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	88	잠원동 63-11	잠원동 63-8	폐 지
변경	-	-	-	-	-	-	
기정	소로	3	4	46	잠원동 63-23	잠원동 63-26	폐 지
변경			-	-	-	-	
기정	소로	2	8	277	잠원동 63-17	잠원동 61-12	잠원동 63-17
변경	"	2	8	277	잠원동 63-17	잠원동 61-12	가각폐지

6. 사업시행기간 : 1995. 7~1997. 12

●마포구고시제 1995-2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개별법에서 정한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5. 8. 5

마 포 구 청 장

1. 사업명 : 신정·구수재건축 주택건설
2. 공동 사업주체 : 신정·구수재건축조합 조합장 류장성, 엔지건설(주) 대표이사 신승교
3. 사업위치 : 마포구 신정동 35-1 일대 및 구수동 101-5 일대
4. 내지면적 : 16,866.67㎡
5. 사업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21~23층

나. 사업내역(변경없음)

6동 538세대

건축연면적 - 68,632.89㎡

6. 사업시행기간 : 1995. 8~1998. 6. 30

●성북구고시제 1995-6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666호(78. 12. 18) 및 제629호(83. 11.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716호(83. 12. 19)로 지적승인된 "성북동길확장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9호(95. 4. 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한 사항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5. 8. 5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사업(도로)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지역	사업 규모	비 고
성북동길 확장공사	삼선교(동소문동 21) ~성북동 65-1	폭(B) = 30m 연장(L) = 840m	

다.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성북구청장
 라. 사업완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사업인가일로부터 96.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 붙임.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따로붙임: 변경 물건조서 1부

변경전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 소	
5	성북구 성북동 128-13	주택상가(1F)	슬래브 / 벽돌	120	주택상가	허규	성북동 128-12	
		주택상가(2F)	슬래브 / 벽돌	120	주택상가	허규	성북동 128-12	
8	성북구 성북동 60-33, 60-48	주택상가(1F)	슬래브/CON'C	33	주택상가	무	허 가	
		주택상가(2F)	슬래브/CON'C	33	주택상가	무	허 가	
		주택상가(3F)	슬래브/CON'C	33	주택상가	무	허 가	
		주택상가(지하)	슬래브/CON'C	33	주택상가	무	허 가	

변경후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 소	
5	성북구 성북동 128-13	주택상가(1F)	슬래브 / 벽돌	125	주택상가	허규	성북동 128-12	면적정정
		주택상가(2F)	슬래브 / 벽돌	125	주택상가	허규	성북동 128-12	면적정정
		옥 탑	슬래브 / 벽돌	5	옥 탑	허규	성북동 128-12	누 락
		지 장 물	블록/선라이트	1식	차 고	허규	성북동 128-12	누 락
8	성북구 성북동	주택상가(1F)	슬래브/CON'C	38	주택상가	무	허 가	면적정정

연번	소재지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 소	
	60-33, 60-48	주택상가(2F)	슬래브/CON'C	38	주택상가	무	허 가	면적정정
		주택상가(3F)	슬래브/CON'C	38	주택상가	무	허 가	면적정정
		주택상가(지하)	슬래브/CON'C	38	주택상가	무	허 가	면적정정

●서대문구고시제 1995-4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177호(62. 12. 18)로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서대문구 경기대~독립문(영천동 66-17~177-1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5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대문구 영천동 66-17~177-1간(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변경없음)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B = 12m, L = 180m(변경없음)

라.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청장(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94. 1~96. 12. 31(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조서 참조(변경)

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조서 참조(변경)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변경전	변 경 후									비 고
	지 번	지 목	면적 (㎡)	수 용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천동 66-16	대	34.1	영천동 66-16	34.1	남가좌동 224-106	임화택				전과 동
영천동 66-17	대	63.6	영천동 66-17	63.6	영천동 151-1	한동열				"
영천동 67-3	대	45	영천동 67-3	45.0	영천동 67-1	최한용				"
영천동 67-2	대	62.8	영천동 67-2	62.8	영천동 67-2	강은옥				"
영천동 68-1	대	57	영천동 68-1	57.0	영천동 67-1	대한애	영천동 68	박지명	(변경)	전세권 설정
						수교장				
						로회주				
						립문중				
						앙교회				
영천동 69-175	대	38.3	영천동 69-175	38.3	영천동 69-70	이종완	영천동 69-70	김준연	(변경)	가압류
							"	권복생		가압류
							"	홍성래		"
영천동 69-176	대	13.6	영천동 69-176	13.6	서초구 반포동 12-20 반포(가) 99-410	한석희				전과 동
영천동 69-111	대	537.5	영천동 69-186	34.4	인천시 금곡동 35	장범진				"
영천동 69-177	대	6.7	영천동 69-177	6.7	충남 공주군 공주읍 산성동 56	유길지				"
양천동 69-29	대	56.5	영천동 69-29	56.5	영천동 69-29	조주형				"
영천동 69-178	대	3.5	영천동 69-178	3.5	영천동 69-164	조길만				"

38-16

제 1914 호

1

10

1995.8.5

38-20

변경전	변 경 후									비 고
	지 번	지 목	면적 (㎡)	수 용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천동 69-30	대	66.4	영천동 69-30	66.4	은평구 대조동 67-8	김종빈				전과 동
영천동 69-179	대	0.4	영천동 69-179	0.4	영천동 69-34	김정애	중구 남대문로2가 9	국민은행 금호동 지점		근저당권설정
영천동 69-32	대	83	은평구 역촌동 69-32	83	은평구 역촌동 16-2	이종호				전과 동
영천동 167-14	대	0.5	영천동 167-14	0.5	영천동 167-5	권오철				"
영천동 69-33	대	66.4	영천동 69-33	66.4	영천동 69-33	이옥선				"
영천동 69-182	대	67.4	영천동 69-182	67.4	영천동 69-133	이근호				"
영천동 69-134	대	114.7	영천동 69-134	114.7	동작구 상도동 461	김기원				"
영천동 69-180	대	19.9	영천동 69-180	19.9	영천동 69-34	김정애	중구 남대문로2가 9	국민은행 금호동 지점		근저당권설정
영천동 69-181	대	15.9	영천동 69-181	15.9	영천동 69-71	김상일				전과 동
영천동 69-183	대	19	영천동 69-183	19	영천동 7-54	임가조				"
영천동 69-184	대	12.6	영천동 69-184	12.6	육천동 127-26	최만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압류
영천동 69-165	대	59.2	영천동 69-186	0.3	영천동 69-165	황학철				전과 동

1994년

시

보

1995. 8. 5

건 물 조 서

변경전	변 경 후									
	물 건 지	구 조	용도	진 물 적 (㎡)	수 용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천동 69-176	목조와즙평 가건본가	주택	36.36	3.9	서초구 반포동 1220 반포(㉠) 99-410	한석희			장독대 A=7.3㎡
	영천동 69-33	목조와즙평 가건본가	주택	26.45	26.45	영천동 69-33	이옥선			가건물 1층 29.55㎡ 2층 43.30㎡
	영천동 69-180	목조와즙평 가건본가	주택	18.48	10.30	영천동 69-34	김정애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 민 은 행 금 호 동 지 점	근저당권설정
	영천동 69-30	목조와즙평 가건본가	주택	29.75	29.75	은평구 대조동 67-8	김중빈			장독대 A=2.5㎡ 가건물 A=13.75㎡
	영천동 68	목조와즙평 가건본가	주택	26.90	26.90	영천동 67-1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독 립 문 중 앙 교회			장독대 A=4.7㎡
	영천동 67-2	목조초즙평 가건본가	주택	15.62	15.62	영천동 67-2	강사옥			가건물 A=18.53㎡ 화장실 A=2.1㎡
	영천동 67-2	부속	주택	5.55	5.55	영천동 67-2	강사옥			
	영천동 69-184	목조와즙	주택	36.36	4.4	경북 금릉군 감문면 금라동 1	김 외 순 외 1인			
	영천동 69-183	목조와즙	주택	78.9	28.2	영천동 7-54	임가조			

38-21

제 1914 호

1

보

1995. 8. 5

변경전	변 경 후									
	물 건 지	구 조	용도	건 물 면 적 (㎡)	수 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영천동 69-182	목조와즙단층본가	주택	36.36	36.36	영천동 69-133	이근호			가건물 A=17.34㎡
	영천동 69-177	목조와즙	주택	21.65	10.5	충남 공주군 공주읍 산성동 56	유길자			
	영천동 69-181	목조와즙평가건본가	주택	26.44	12.80	은평구 용암동 603-78	김양일			
	영천동 69-32	목조기와지붕	주택	39.67	39.67	은평구 역촌동 16-2	이종호			가건물 1층 17.53㎡ 2층 14.80㎡
	영천동 69-29	목조와즙평가건본가	주택	29.75	29.75	영천동 67-29	조주형			가건물 A=11.35㎡ 가건물 A=2.7㎡
	영천동 66-16					남가좌동 224-106	임화택			가건물 A=35.1㎡
	영천동 66-17	목조와즙	주택	27.1	27.1	영천동 66-7	한종만			가건물 A=27.1㎡
	영천동 69-175					영천동 69-70	이완기			가건물 A=38.7㎡
	영천동 69-111					영천동 69-70	이일순			가건물 A=5.3㎡ 화장실 A=0.7㎡
	영천동 69-164	목조와즙		24.79	24.79	영천동 69-164	조길만			(추가)

38-22

부 131.4.5.5

시

단

1995.8.5

구 공 고

●양천구공고제 1995 - 100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69호(94. 11. 10)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되고 양천구고시 제1995-24호(95. 6. 1)로 지적승인된 양천구 신정동 871-30~871-2간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5. 8. 5

양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95. 7. 28~95. 8. 10(14일간)

나. 공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정비과
다. 공람개요

○ 사업시행지 : 신정동 871-30~871-2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명칭 : 신정동 871-30~871-2간 전력구공사

○ 사업규모

연장 : 1,938m, 직경 : 4.50m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999년 6월 30일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640-338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공고제 1995 - 255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8. 5

서 초 구 청 장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95. 7	비계구조물해체 경기-07-1	영흥중기	서초동 1341-10	이준수	(주) 영흥중기	서초동 1341-10	이준수

●동작구공고제 1995 - 118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우리구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

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995. 8. 5

동 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1995. 7. 25~1995. 8. 8(14일)

간)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820-1385~7)
 3.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

4. 기타 :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기점	종점	연장(m)	비고
1	당초	소로 3류	사당동 443-22	사당동 443-22	50	재건축 단지내 도로위치 일부 변경
	변경	소로 3류	사당동 443-22	사당동 442-4	55	
2	당초	소로 3류	사당동 205-22	사당동 205-24	130	재건축 단지내 도로위치 일부 변경 및 폐지
	변경	소로 3류	사당동 205-22	사당동 205-26	75	
3	신설	중로 3류	상도동 산 5-1	상도동 산 5-1	90	상도여자중학교 앞 진입도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당초	학교(영등포중·고교, 영화국교)	대방동 13-1 외 18필지	46,823	
	변경	"	"	46,568	감 255㎡

● 서초구공고제 1995-25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

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8. 5

서 초 구 청 장

가.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대상자			위반법규	행정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1	88-22-15	88. 4. 15	신기욱	380405-1675717	새한건설(주)	110111-0567739	서초동 1580-5	5억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영업정지 6월(95.8.1~96.1.31)

●마포구공고제 1995-128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

1.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면은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5
마 포 구 청 장

○ 도 로

연번	사업의 종류	명 - 칭	위 - 치	규 모(m)			시 행 기 간	비고
				폭	연 장	면적(m ²)		
1	도 로	중동 79~57간 도로 개설공사	중동 79-1~47-4	8	110	880	1단계	
2	도 로	망원동 453~211간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453-33~211-42	10	560	2,240	2단계	
3	도 로	신수동 100~91간 도로개설공사	신수동 100~91-444	15	200	3,000	2단계	
4	도 로	신수동 81~현석동 145 도로개설공사	신수동 91-508~112	15	300	4,500	2단계	
5	도 로	신수동 325~395간 도로개설공사	신수동 325~395	8	210	1,680	1단계	
6	도 로	대흥동 50~140간 도로개설공사	대흥동 50-2~140-5	8	180	1,440	2단계	
7	도 로	공덕동 122간 도로 개설공사	공덕동 122-17~122-13	8	40	320	2단계	
8	도 로	공덕동 234간 도로 개설공사	공덕동 234	8	14	168	2단계	
9	도 로	공덕동 116~105간 도로개설공사	공덕동 116-7~105-61	12	110	1,320	2단계	
10	도 로	염리동 14~아현동 638 도로개설공사	염리동 14-340~638-64	8	17	1,360	2단계	
11	도 로	하수동 144~서교동 358 도로개설공사	하수동 144~서교동 358	15~25	715	11,700	2단계	
12	도 로	서교동 345~창전동 2 도로개설공사	서교동 345-30~창전동 2	15~25	850	17,000	2단계	
13	도 로	신수동 91~88간 도로개설공사	신수동 91-347~88-5	15	350	5,250	2단계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규 모(m)			시 행 기 간	비 고
				폭	연 장	면적(㎡)		
14	도 로	아현동 342~염리동 14 도로개설공사	아현동 324-20~염리동 14-2	8	450	3,600	2단계	
15	도 로	창전동 12~131간 도로개설공사	창전동 12-1~131	10	270	2,700	1단계	
16	도 로	노고산동 107~신수동 81 도로개설공사	노고산동 107-77~신수동 81-59	8	120	960	2단계	
17	도 로	신수동 89~177간 도로개설공사	신수동 89-34~177-41	15	95	1,430	2단계	
18	도 로	염리동 14간 도로개설공사	염리동 14-203~14-209	8	33	264	2단계	
19	도 로	아현동 639~637간 도로개설공사	아현동 639~637	8	120	960	2단계	
20	도 로	아현동 640~645간 도로개설공사	아현동 640-14~645-5	8	100	800	2단계	
21	도 로	용강동 111~26간 도로개설공사	용강동 111~26-15	8	230	1,840	2단계	
22	도 로	신수동 380~현석동 145 도로개설공사	신수동 380~현석동 145-1	15	280	4,200	2단계	

○ 녹 지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시행기간	비 고
1	녹 지	공덕 1녹지	공덕동 435-3	620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2	녹 지	공덕 2녹지	공덕동 439-5	687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3	녹 지	공덕 3녹지	공덕동 236-26	702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4	녹 지	아현 2녹지	아현동 602-3	731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5	녹 지	아현 3녹지	아현동 602-1	510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6	녹 지	아현 4녹지	아현동 600-5	698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7	녹 지	마포 녹지	마포동 35-14	660	2단계	재개발사업시행지

○ 공 원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시행기간	비 고
1	어린이공원	성산동(I)공원	성산동 39-18의 1	694	1단계	
2	어린이공원	성산동(II)공원	성산동 199-8	250	1단계	
3	어린이공원	상암동(I)공원	상암동 153의 2	337	1단계	
4	어린이공원	상암동(II)공원	상암동 34-19	291	1단계	
5	어린이공원	마포공원	마포동 377-1	2,345.9	2단계	재개발사 업시행지
6	어린이공원	도화2공원	도화동 47-2	3,259.3	2단계	"
7	어린이공원	공덕공원	공덕동 255-6	1,604	2단계	"
8	어린이공원	공덕4공원	공덕동 423-34	2,370.3	2단계	"
9	근린 공원	성산공원	성산1동 산11-1의 10필지	50,800	2단계	
10	근린 공원	샛터 공원	성산2동 산1-73의 7필지	31,100	2단계	
11	근린 공원	와우 공원	창전동 산1-73의 8필지	60,700	1단계	
12	근린 공원	노고산공원	노고산동 2-2의 8필지	33,418	2단계	
13	근린 공원	망원 자매공원	망원동 232-30의 62필지	24,000	2단계	
○ 학 교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시행기간	비 고
1	학교(중)	학교설립	상암동 1187	11,439	2단계	
2	학교(고)	학교설립	상암동 220-2	16,529	2단계	
○ 수 도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시행기간	비 고
1	수 도	성산 배수지	성산동 산 11-58 일대	33,418	1단계	용량 3만t
2	수 도	와우산배수지	창전동 산 1 일대	5,246	1단계	용량 6만t
○ 시 장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시행기간	비 고
1	시 장	중동시장	중동 35-30	1,168.6	2단계	
○ 주차장						
연번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면적(㎡)	시행기간	비 고
1	주차장	공공주차장시설	성산동 275-44, 275-55, 275-56	1,168.6	2단계	성산동 275-56 1132 중 469.3㎡

●구로구공고제 1995 - 1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1995-41호(95. 7. 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한 것이나 송달 불능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토목과

1995. 8. 5

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312-14, 16호 양측가각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개봉3동 312 양측 가각전제공사
 - 다. 사업규모 : 가각전제 A=18㎡
 -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마. 사업시행일 : 인가일로부터 95.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 : 별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2) 위치도 1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개봉3동 312-76	대지	6	6	대지	박동호	구로구 천왕동 1-9
2	개봉3동 312-77	대지	12	12	대지	김원철	개봉3동 312-16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 용상황	소유자	
						성명	주소
1	개봉3동 312-14	주택	연와조 시멘와즙	2㎡	방	박동호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9
			담장 벽돌	8m	담장	박동호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9
2	개봉3동 312-16	주택및 점포	연와조 시멘와즙	9㎡	점포	김원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12-16

한강관리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95-81
호
하천점용허가(선박운항허가)

한강 구역 내에서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선
박의 운항)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8. 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운항허가척수	운항구간	허가기간	운항목적	허가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5. 7. 26	총 : 16척 모터보트 2척 보 트 14척	한 강 (갑 원 보트장~한 남대교~한 포대교)	1995. 7. 26~ 1995. 11. 30	유선사업 경 영을 위한 선 박운항	서울 강남구 대 치동 945 삼안 빌딩 9층	새원해운(주) 대표이사 이 성진

동부건설사업소공고



●동부건설사업소공고제 1995-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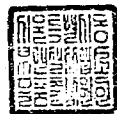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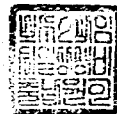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규
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5. 8. 5

동부건설사업소장

1. 사용 개시일 : 95. 7
2. 등록인명 : 별첨
3.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경리관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지출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직 인 등 록 조 서	인 영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물품관리관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동부건설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보수1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보수2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동부건설사업소 보수1과 분임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동부건설사업소 보수2과 분임물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직인 등록 조서	인 영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동부건설사업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사용개시일 : 1995년 8월 1일	
직인 폐기 신고서	인 영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경리관 폐 기 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지출원 폐 기 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물품관리관 폐 기 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물품출납원 폐 기 일 : 1995년 8월 1일	
회 계 명 : 일반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동부건설사업소 직 명 : 동부건설사업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폐 기 일 : 1995년 8월 1일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1995-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등록재산변동사항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995. 8. 5
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① 소 속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② 직 위	교육위원	③ 성 명	이기형
④ 본인관의 관계	⑤ 재산의 종류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⑦ 가 액 (천 원)	⑧ 비 고	
본 인	예 금	한국주택은행(3,442) 농협(△134) 현대해상화재(315) 신동아화재(516) 삼성생명(707) 서대문우체국(886)	5,732	치과진료수입	
(소 계)			5,732		
총 계			5,732		

인사발령

7급이하 공무원 면직

발령 제392호 (1995. 7. 24)

주차계획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찬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 행정서기보 한창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7급 기술직공무원 시보해제

발령 제393호 (1995. 7. 25)

서울대공원 지방수의주사보시보 이성우 지방수의주사보에 임함

서울특별시

가능직공무원 정규임용

발령 제394호 (1995. 7. 25)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이상국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권용일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나일선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박준선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김광섭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장은성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양용식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김진수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박정하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전기원10등급시보
 한원일 지방전기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승철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홍윤종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이하기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이창균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덕현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이원열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박민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홍년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영현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이해관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남원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태현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왕래룡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장새일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정새권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박용구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차량정비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이종갑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차량정비사업소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대용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소방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시보 김형천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서울 특별 시장

지방별정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395호 (1995. 7. 26)

시의회사무처 지방별정직 5급 상당(비서관) 박용훈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의회사무처 지방별정직 8급 상당(비서) 전혜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 특별 시장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396호 (1995. 7. 26)

신규 박용훈 지방별정직4급상당(비서관)에 임함 14호봉을 급함 시의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신규 김민녕 지방별정직8급상당(비서)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의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서울 특별 시장

지방별정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397호 (1995. 7. 26)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지방별정직7급상당(영양사) 최연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 특별 시장

6급이하 기계직공무원 전보

발령 제398호 (1995. 7. 27)

공업시험소 지방기계서기 이기성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서울특별시

6급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발령 제399호 (1995. 8. 1)

[신규임용]

신규 최창화 지방별정직6급상당(한강안전관리대원)에 임함 26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이문수 지방별정직7급상당(한강안전관리대원)에 임함 17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조천식 지방별정직7급상당(고압가스관리기사)에 임함 14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신규 최진 지방별정직7급상당(영양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부녀보호소 근무를 명함

신규 임미숙 지방별정직7급상당(영양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신규 서국태 지방별정직8급상당(체육지도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신규 김종역 지방별정직9급상당(한강안전관리대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면직]

한강관리사업소 지반 정직7급상당 최창화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9급상당 이문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00호 (1995. 8. 1)

공무원교육원 지방기계원(8등급) 조천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6급 행정직공무원 전출

발령 제401호 (1995. 7. 27)

내무국 지방행정주사 김덕수 내무부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발령 제402호 (1995. 7. 27)

신규 박노출 지방별정직5급상당(비서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시의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7급이하 기술직 휴직

발령 제404호 (1995. 7. 27)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토목주사보 유주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토목서기 박정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405호 (1995. 7. 27)

도로시설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최문경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95. 7. 27~96. 7. 25)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복직

발령 제406호 (1995. 7. 27)

소방본부 지방위생원(사역10등급) 최은
 정 복직을 명함 소방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 특별 시장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발령 제407호 (1995. 7. 28)

감사 2담당관 지방세무주사 박종문 서울
 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파견(95. 7. 28~95.
 8. 11)

세정과 지방세무주사보 최한철 서울특별
 시 선거관리위원회 파견(95. 7. 28~95. 8.
 11)

세정과 지방세무주사보 류종기 서울특별
 시 선거관리위원회 파견(95. 7. 28~95. 8.
 11)

세정과 지방세무주사보 이성수 서울특별
 시 선거관리위원회 파견(95. 7. 28~95. 8.
 11)

서울 특별 시장

기 타

출석통지서

인적 사항	①성명	한글	유회청	②소속	강남구 총무국
		한자	柳熙淸	③직명	지방행정주사
	④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320동 407호			
	⑤출석이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			
	⑥출석일시	1995년 8월 21일 14시 00분			
	⑦출석장소	서울특별시청 3층 기획상황실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5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회 위원장

귀 하

(질 취 선)

진술권포기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명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5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출석통지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박 주 환	② 소 속	금천구 독산3동
		한 자	朴 周 煥	③ 직 명	지방운전원10등급
	④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121-32			
	⑤ 출 석 이 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			
	⑥ 출 석 일 시	1995년 8월 21일 14시 00분			
	⑦ 출 석 장 소	서울특별시청 3층 기획상황실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5년 8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귀 하

(절 취 선)

진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명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5년 월 일

성명

(인)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출석 통지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정 해 주	② 소 속	지하철건설본부
		한 자	丁 海 柱	③ 직 명	지방토독주사
	④ 주 소	서울시 도봉구 창3동 537-26호(6통2반)			
⑤ 출 석 이 유		징계사유에 대한 심문과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함			
⑥ 출 석 일 시		1995년 8월 21일 14시 00분			
⑦ 출 석 장 소		서울특별시청 3층 기획상황실			
<p>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p> <p>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p> <p>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p>					
<p>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1995년 8월 일</p> <p>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p> <p>귀 하</p> <p>(절 취 선)</p> <p>진술권포기서.</p>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명	
	주 소				
<p>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199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인)</p> <p>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